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안 제2조)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문구 조정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8조의2)

-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안 제19조제6항)

-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되 “친족의 경조사”에 한함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안 제20조제1항)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마. 그 밖에 미비사항 정비

-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

·결혼(본인) : 7일 ⇒ 5일로 조정, 결혼(자녀) : 1일 신설

·출산(배우자) : 3일 ⇒ 5일로 조정

·입양(본인) : 20일 신설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를 삭제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를 삭제한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삭제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군수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u>
제13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u><삭 제></u>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u><삭 제></u>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	<u><삭 제></u>

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3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